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하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평가 등 미이행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용

1. 설계단계 및 공사 시행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미이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13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개정 2015. 6. 30.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이라고 한다.)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 등 VE 전문기관¹⁾의 최근 5년(2011년~2016년)간 환경시설

분야 총 191건(공사비 8조108억원)의 설계VE 수행성과를 평가한 결과, 공사비는 2천 351억원 절감(절감율 3.06%) 되었으며, 시설물 성능은 10.44%(원안설계 대비) 향상되었다.

[표1] 환경시설분야 VE 전문기관 수행성과

<단위: 백만원>

수행년도	VE건수	공사비	VE제안 아이디어 반영건	VE 절감금액		원안설계 대비 시설물 성능 향상(%)
				금액	절감율(%)	
합계	191	8,010,812	11,246	235,165	3.06	10.44
2011	15	1,102,571	614	25,543	2.41	14.54
2012	44	1,995,430	2,028	35,976	1.80	8.01
2013	33	1,300,687	1,738	42,427	3.26	8.66
2014	33	1,256,190	2,754	50,729	4.04	8.65
2015	33	1,263,815	2,086	40,529	3.21	10.47
2016	33	1,092,119	2,026	39,961	3.66	12.30

※ 자료출처 :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 ○○○과는 2010. 5. 27.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 및 (주)○○○○○○○ 등 2개사와 계약 (계약금액 1,054백만원)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 되어 설계자문회의(2010. 11. 17.) 또는 설계심의회(2011. 4. 6.) 전에 설계의 경제 성등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1. 9. 11. 설계용역을 준공 (공사비 42,002백만원, 관로정비 5.9km)하였다.

또한 2012. 3월 동 설계용역 공사를 제1, 2공구로 분할(도급공사비 1공구 12,192백만원, 2공구 9,282백만원) 발주한 이후 제1공구 공사비가 당초 대비 17.26 퍼센트로 증가(↑2,104백만원, 계약변경일 2014.1.14.) 되는 설계변경이 발생됨에 따

1) VE전문기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기획재정부 고시2010-141호)

라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7. 3월 준공(착공 도급 공사비 대비 1, 2공구 합계 5,588백만원(증) 26.32%(증))하여 사업의 예산절감 및 시설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극락천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 및 공사 현황

설계단계		공사단계			
용역명	용역사 (용역금액)	공사계약명	도급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시공사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주)○○○○○○○○ (1,054백만원) *설계서상 공사비 42,002백만원	○○○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제1공구)	착공 11,948백만원 준공 15,907백만원 (증) 3,959백만원	2012.3.5. ~ 2017.3.19.	○○종합건설 (주)외 2개사
		○○○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제2공구)	착공 9,282백만원 준공 10,911백만원 (증) 1,629백만원	2012.3.5. ~ 2017.3.16.	(주)○○건설
		공사중 설계변경	제1공구 설계변경 제3회('14.1.14.) - 도급공사 당초: 12,192 → 변경: 14,296 증2,104백만원(17.26%) * 물가변동액(250백만원) 공제 후 금액: 1,845백만원(15.13%)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은 업무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5. 7. 10.)」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²⁾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시기는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2012. 12. 26. ‘○○○ 외 6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을 (주)○○○○○○○ 및 (주)○○○○○○○○ 등 2개사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통합전면책임감리)을 체결하였고, 2012. 12. 27. 착공하여 2015. 8. 30. 준공(준공금액 645백만원) 하였다.

이에 따라 광산구 ○○과는 해당용역이 준공된 2015. 8. 30.부터 2016. 2. 29. 기간 내에 동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1]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대상 사업현황

용역 사업명	용역 대행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기한	이행여부
○○○ 외 6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	(주)○○○○○○○, (주)○○○○○○○○	2012. 12. 27 ~ 2015. 8. 30	645백만원	2016.2.29	미이행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설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 광산구청장은

[주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경우 설계VE와 감독 권한대행 업무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